

<별지 서식>

- ※ 정보공개서는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작성·등록**하여야 합니다.
- ※ 목차는 가맹본부에 맞게 더 자세하게 나누십시오.
- ※ 이하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의 가맹본부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표준정보공개서를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시고, 특히 대괄호[] 안의 내용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없음”,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등으로 일반인이 알기 쉽게 표시하십시오.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본문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점선으로 된 글상자 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관련 내용과 다른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표준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양식을 사용한 것만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검토를 하신 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정보쌈

[등록번호 : 20250661]
[최초등록일 : 2025.06.12.]
[최종등록일 : 2025.06.12.]

dondamoa1975@hanmail.net

[손정보쌈]

정 보 공 개 서

[재영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재영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남로23번길

8-3, 301호(범박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566-395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869-152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운영팀 1566-3952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재영푸드	손정보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남로23번길 8-3, 301호 (범박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5.05.09.	정재영	1566-3952	02-869-1525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12-29-3539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정재영	손정보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남로23번길 8-3, 301호 (범박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재영	1566-3952	02-869-152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손정보쌈]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손정보쌈	
상 호	손정보쌈 000점	
로고	손정보쌈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	-	-
2023년	-	-	-	-	-	-
2024년	-	-	-	-	-	-

*당사는 2025년 사업 전개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25년 사업 전개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재영	2025.05~현재	재영푸드 대표	회사업무 총괄

*당사는 [손정보쌈] 가맹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력이 있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	-	-

*당사는 2025년 사업 전개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의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아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손정보쌈] 가맹사업 현황

1. [손정보쌈] 가맹본부를 시작한 날 :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손정보쌈]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영푸드	손정보쌈	정재영	가맹사업 시작 예정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남로2 3번길 8-3, 301호(범박동)

3. [손정보쌈] 업종

영업표지	업종	
손정보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보쌈, 알곤이 볶음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손정보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손정보쌈]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	-	-	-	-	-
2023년	-	-	-	-	-	-
2024년	-	-	-	-	-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손정보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손정보쌈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가 직전년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 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해당없음	-	-	-	-	-	-
서울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강원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 [손정보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손정보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손정보쌈]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손정보쌈]과 관련하여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광고	온라인 광고 등	2024.1.1.~12.31	-	
판촉	-	2024.1.1.~12.31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활용하고 있고 그 내역은 아래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에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손정보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피해보상보험으로 처리	-
보증금	가맹본부	피해보상보험으로 처리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입비	11,000	가맹계약 체결 후 피해보상보험증권 발행 직후	가맹사업법상 반환사유	가맹사업법에 따름	가맹계약서에 따름
교육비	5,500	가맹계약 체결 후 피해보상보험증권 발행 직후	교육 시작 1일전	실비적 성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하지 않음

2)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가맹계약 체결 후 피해보상보험증권 발행 직후	1) 가맹본부에게 채무 존재 시 상계 후 반환 2)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 (간판, 디자인 등 영업표지 제거 등) 미이행시 조치 후 반환	-

3) 최초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9,500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활용하고 있기에 귀하는 최초가맹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고 최초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m2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11,100	3,703			99㎡ (30평) 기준 4인 테이블 및 의자 52인석 기준
인테리어	별첨1_1. 거래상대 방 참고	56,100	1,870	별도 계약	-	3.3㎡ 마다 187만원 추가
간판		14,300	해당없음	별도 계약	공사/공급 일 3일 전	
의탁자		5,500	해당없음	별도 계약		
주방/홀설비 및 집기		16,500	550	가맹계약 체결 시		냉동/냉장고, 작업대, 선반 등 주방장비 등
홀/주방기물		9,900	해당없음	가맹계약 체결 시		그릇, 홀/주방집기 등
초도물품		5,500	해당없음	별도계약		개점을 위한 공급받는 식자재 등
개점준비물		1,100	해당없음	가맹계약 체결 시		홍보물, 유니폼, 앞치마 기타 용품 일체 등
POS 등		2,200	해당없음	별도계약	-	POS 본체, 리더기 등

[위 표의 금액은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에게 인테리어,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공사를 의뢰할 경우, 99㎡를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의 3.3㎡당 금액의 산정은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이며, 품목에 따라 면적과는 성질상 비례하지 않아서 실제 면적과는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 정한 업체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인테리어, 시설, 장비에 대한 공사를 스스로 정한 업체와 직접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의 점포의 시설과 설비는 가맹사업의 목적성을 달성하고 가맹점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내용을 준수하기로 합니다.
2. 당사는 귀하에게 기본적인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마련하고 계약체결 이후 공사 시작 전까지 귀하에게 제공한 후 시공을 시작합니다.
3. 당사가 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점포의 시설과 설비를 한 경우, AS기간을 12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인테리어 소모품의 경우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AS는 유료로 합니다.
4.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가 아닌 업체를 스스로 정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점포 내/외장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기획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귀하는 3.3m²당(45만원, VAT별도)의 기획관리비와, 간판 기획관리비로 당사가 전적인 간판금액의 10%(VAT별도)를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최종적으로 귀하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스스로 공사를 한 경우, 가맹점 개점 전에 공사결과를 당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공사결과가 사전에 협의된 “공사도면 등”의 수준에 부족하거나 잘못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는 보완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귀하는 제기된 보완공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개점의 지연이나 보류에 대해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6.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지역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 (10)%의 추가 경비가 발생합니다(제주 및 도서지방은 협의).
7. 매장의 여건에 따라 소방 설비, 철거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 외부 파샤드 및 그 주변 추가공사, 기본 설비 외 추가공사(배기시설 입상, 내외부 상하수도, 전기, 정화조, 외장 추가, 외부파샤드, 어닝, 덕트, 내외부 테라스, 데크 설치 등 추가공사 등), 복도 등 매장 외 추가공사, 전면 유리공사 교체, 자동문, 방풍실, 화장실의 공사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냉난방기,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주방 및 홀에 필요한 자옐품목 등은 귀하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구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가맹사업자의 자체 구입 또는 추가
 - * 냉난방기와 TV 및 컴퓨터 등 전자제품 구입 품목
 - * 개점을 위해 가맹본부가 허용한 초도 원/부자재, 식자재 등
 - * 개점을 위해 가맹본부가 허용한 소모품(마트 구입용) 등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1)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개설지역, 총 투자자금, 매장 유형 선호도, 가맹희망자의 창업이유, 개인성향, 투자 기대치 등 파악. 2)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출점기준과 출점전략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가맹희망자가 이에 적합한 점포를 구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할 것을 고지함 3) 가맹희망자가 제안한 점포들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는 사전분석, 현장 조사, 출점 가능여부 체크해서 매물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가맹희망자가 최적의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줌. 4) 가맹희망자의 요청에 의해 가맹본부가 협조차원에서 제공한 점포인 경우에는 그 점포들에 대해 가맹희망자에게 그 점포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함. 가맹희망자가 자발적 또는 스스로 본인의 투자자금 범위 및 개인적 성향에 비추어 해당 점포가 적합할지에 대해 현장 조사 및 판단할 기회를 드려 가맹희망자가 주체적으로 선정토록 가맹본부는 협조함. 5) 최종 선택은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투자자금, 개인적 성향, 출퇴근 거리, 관리적 요소, 창업 기대목표 등을 고려하여 가맹희망자가 주체적으로 선정. ※ 가맹희망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점포에 대한 가맹본부의 출점 승인은 가맹희망자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곳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맹점의 매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 성공은 상권과 입지의 면도 중요하지만, 가맹점 오픈 이후 본사의 매뉴얼, 영업방식, 판매방식 등의 준수, 점포의 청결 및 위생관리, 고객관리 및 자발적인 점주의 마케팅 노력과 점주의 노력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점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자는 가맹희망자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정상적인 가맹사업거래가 가능한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가능한 자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손정보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해야 할 가맹금은 일시불이 원칙입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1. 월매출 산정기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페이결제 등이 포함된 POS 매출, 배달매출 등 모든 일 고객결제액(부가세 포함) 2. 산정방법 위 1번 '월매출 산정기준 (부가세 포함)'에 기반하여 2.2%(부가세 포함) 부담	익월 5일	반환안됨	-	정률제 (CMS자동이 체신청)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	광고 전	광고 전	광고 후	V-9의 10. 참조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	사전 통보	-	집행 후	V-9의 10. 참조
점포환경 개선 비용	협의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 통보	-	실행 후	VII의 1. 참조
POS 사용료	협력업체	메인포스: 22,000원 서브포스: 16,500원	매월	반환안됨	사용료	POS 구매가 아닌, 임대 시 테이블 오더 사용료는 별도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 다음날부 터 지급 날까지	반환안됨	가맹점 귀책사유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상기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명의인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귀하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자체 공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원자재,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차액가맹금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필요시	
매출관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열람	필요시	
위생 및 청결관리	식자재의 위생 및 점포의 청결상태 관리	필요시	
점포 운영관리	전체적 점포 운영에 대한 매뉴얼 실천에 대한 관리	필요시	
원/부자재 관리	자점 매입에 대한 관리	필요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재가맹비(10년 후 신규 가맹계약서상 가맹비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

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운영팀

[가맹점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포괄적인 양도입니다. 양도 입장의 가맹점은 양도과정에서 자신의 가맹점의 매출액, 운영상태 등에 대해 허위나 거짓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입비는 면제되지만, 교육비, 보증금 및 기타 실비는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맹계약은 신규 가맹계약이므로, 최초가맹비 모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지체 없이 당사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가 들어간 내부 시설물, 기자재, 상품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

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당사에 반환하는 등 원상복구 책임을 다합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불판”을 본사에 전량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불판”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 또는 판매하게 될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위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미지급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과 원상복구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 후 귀하에게 이를 반환합니다.

③ 위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비용은 귀하가 부담하되, 당사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④ 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계약 종료일 또는 상호 약속한 날까지 귀하가 위 제1항의 영업표지 제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위의 영업표지 제거한 후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의 잔액을 귀하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 종료일까지 귀하는 당사가 제공한 메뉴 및 운영 매뉴얼 및 기타 본사에서 지급받은 가맹점 운영에 관계된 문서와 설비 등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⑥ 귀하는 계약의 종료시점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정산하여 반환하기 전, 서로 합의된 날짜까지 사업자등록증의 폐업은 물론 포털의 지도검색 삭제와 매장 전화번호 삭제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손정보쌈]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개점한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손정보쌈]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손정보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2) 당사가 [손정보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하는 메뉴의 제한	위반 시 책임
V-3-3)의 메뉴명 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매장, 포장, 배달 등 판매형태와 상관없이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다른 사업자	가맹본부에게 공급받은 물품	본사 동의없이 가맹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불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2. 메뉴명 및 판매가 참고)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보쌈과 알곤이를 주메뉴로 판매하는 외식업	손정보쌈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 설정	운영 (계약서에 영업지역 지도 별첨함)
설정기준	가맹점의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설정방법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지도로 영업지역을 표기함 (지도별첨)
거리개념	500m포털 사이트 지도상 직선 반경을 의미함
설정된 영업지역 보호방식	계약 기간 중 설정된 영업 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로 개설하지 않음
마케팅 측면에서의 영업지역 보호 (판매, 영업활동, 마케팅, 홍보 등)	* 운영하지 않음 * 당사의 영업지역 보호제도는 계약 기간 중 설정된 영업 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 개설 또는 직영점 개설 등 물리적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지, 해당 가맹점의 영업 지역 내에서 판매 및 영업활동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모든 가맹점들은 TV/라디오/신문(지역 케이블 방송, 지역라디오, 지역신문), 지역의 주요 광고 홍보 판촉 매체(아파트 미디어 보드광고, 전단지 판촉등, 각종 오프라인 판촉행사등)등을 통해 영업지역의 제한 없이 판매/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매장/포장/배달 등 판매형태에 상관없이 적용됨
배달판매의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배달판매에 대한 영업지역의 설정하지 않음. 위의 “마케팅 측면에서의 영업지역 보호”와 같은 개념으로 배달판매의 판매/영업지역을 제한하거나 임의대로 설정하지 않음

해당 영업지역의 보호제도 및 영업지역 재설정지 사안은 매장형태의 사업에서 물리적 신규 출점에 관한 사안이므로, 가맹점에서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배달판매의 영업지역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맹점이 배달사업을 시작할 경우 가맹본부는 “배달사업 이해와 진행 동의서”와 “배달가능지역 설정과 가맹계약서와의 관계 설명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달 영업지역은 현재로서는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경영적 판단에 의해 배달 영업지역의 설정의 필요성 발생, 가맹사업법의 변경, 가맹점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 발생, 신규 출점의 방해, 가맹점간의 분쟁들이 발생이 명백한 경우 가맹본부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배달 영업지역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손정보쌈’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손정보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가맹점 총 매출액)	기타 오프라인 (직영점 총 매출액)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0%	0.0%	0.0%	0.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중 (가맹점 전용판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0%	0.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손정보쌈]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5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손정보쌈]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가맹점을 양도, 상속, 전대를 하거나, 가맹계약에 명시된 업종 이외의 영업활동 및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② 당사의 승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인을 바꾸거나, 실제 운영주체가 바뀌는 경우
- ③ 제50조 (경업금지)을 위반하는 경우
- ④ 당사에 대한 미수금액이 발생하여 2회 이상 지정날짜까지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 ⑤ 가맹계약기간 중 당사에 대한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넘어 지정된 날짜까지 계약이행보증금의 원금을 복원하지 못하는 경우
- ⑥ 제38조 (가맹점 운영과 판매·영업의 표준화) 1호, 3호, 7호, 8호에 관하여 귀하가 부당하게 그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당사로부터 2회 이상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 ⑦ 공급받은 원부자재 관리소홀과 위생상태 불량으로 2회 이상 당사나 외부 기관에게 지적을 받는 경우
- ⑧ 계약내용, 운영방침, 매뉴얼에 대한 귀하의 불이행이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 ⑨ 귀하가 제30조 (판매상품의 준수와 변경) 1호를 위반하여 당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명칭을 바꾸거나 레시피를 수정하여 허락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⑩ 귀하가 제31조 (권장가격의 준수와 변경) 1호를 위반하여 당사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가격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
- ⑪ 조리매뉴얼, 판매 및 영업방식, 고객 서비스(고객과 대면 접촉에서 발생하는 모든 언어적 시각적 서비스 행위, 유니폼 착용 등도 포함) 등의 미준수 또는 불량으로 당사로부터 개선조치를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 ⑫ 귀하가 제29조 (자점 매입금지)을 위반하여 사업을 통해 제3자와 거래한 경우
- ⑬ 귀하가 당사가 지정하지 않은 원·부재료 등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⑭ 귀하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의 훼손과 가맹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자신의 가맹점에만 국한된 일방적 요구나 이익제공을 당사에게 요구하여 당사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경우
- ⑮ 귀하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등의 교육과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본사가” 실시하는 교육, 훈련, 경영지도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 ⑯ 가맹계약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 불만의 소리가 접수되어 당사가 이를 시정해 줄 것을 2회 이상 권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무시 또는 거부하며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 ⑰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쳐 그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 ⑱ 제38조 (가맹점 운영과 판매·영업의 표준화)의 4호, 7호, 8호와 관련하여 귀하가 표준적인 월 운영일과 일 운영시간에 대해 당사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단축시키는 경우
- ⑲ 귀하가 당사와 협의 없이 가맹점을 3일 연속 개점하지 않거나 귀하가 연락두절로 당사의 공지사항의 전달이 2주 이상 불가능 또는 공문의 서류가 2회 이상 반송되어서 오는 경우
- ⑳ 당사가 진행하는 광고와 판촉행위에 대해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 ㉑ 귀하가 점포환경개선에 대해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 ㉒ 당사의 노하우, 영업비밀, 가맹사업에 중요한 사안들, 가맹본부에 관련된 정보를 당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을 하는 경우
- ㉓ 귀하가 제3자나 다른 가맹점과 접촉하여 해당 가맹사업의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가맹사업 및 운영에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얘기로 당사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
- ㉔ 귀하가 당사 동의없이 영업표지를 허용된 사용범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점포의 간판, 인테리어, 시설 및 장비를 당사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추가, 삭제, 변경하는 경우
- ㉕ 귀하가 제39조 (포장과 배달 판매·영업활동)의 3호, 4호, 6호, 7호, 8호, 9호, 10호를 위반하는 경우
- ㉖ 귀하가 제40조 (복장, 품위유지, 고객서비스)의 4호를 위반하는 경우
- ㉗ 귀하가 당사의 임원과 직원, 그리고 협력업체 등에게 비정상적인 요구나 폭언, 협박, 위협, 비인격적 대우 등의 언행을 하거나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그들에게 유사한 행위를 하여 당사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 ㉘ 제33조 (POS 등 설비 및 기기) 1호를 위반하여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가 지정
한 POS 등 설비 및 기기를 구비하지 않거나 귀하의 상황으로 개별 POS 사용 시 제41조
(회계·매출자료 작성과 열람, 주요 보고의무)의 4호, 5호, 7호를 위반하는 경우
- ㉙ 귀하가 가맹계약서 및 관련된 내용(예 : 특약, 별도 약정서, 합의서, 동의서 등 기타 제
반 문서)을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
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
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6조 2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 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 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 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 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 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비고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변화와 가맹사업의 성공 및 사업목적의 달성과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형평성의 문제로 불합리한 계약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운영팀

[가맹점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포괄적인 양도입니다. 양도 입장의 가맹점은 양도과정에서 자신의 가맹점의 매출액, 운영상태 등에 대해 허위나 거짓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입비는 면제되지만, 교육비, 보증금 및 기타 실비는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맹계약은 신규 가맹계약이므로, 최초가맹비 모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 양도과정에 준함	계약이행보증금과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가맹본부 사전 동의 필요			
업무위탁	시행하지 않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손정보쌈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경업금지 업종”을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으로 경영을 하거나, 경업금지 업종의 다른 당사의 가맹점으로서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스스로 경영과 관련된 가맹본부를 설립하는 경우 “경업금지” 및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고, 이에 대해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보쌈과 알곤이를 주메뉴로 판매하는 외식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운영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손정보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시간/일(오전10시~오후10시)	28일/월	문의: 운영팀

가맹점사업자는 점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그리고 점심 영업을 시작한 후,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 후 승인을 구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기 준	담당팀	비고
매장청결	본사 매뉴얼	본사운영팀	
친절도	본사 매뉴얼	본사운영팀	
품질준수	본사 매뉴얼	본사운영팀	
영업방식 준수	본사 매뉴얼	본사운영팀	
매출자료	본사 매뉴얼	본사운영팀	
식품위생 및 보관상태	본사 매뉴얼	본사운영팀	
원부자재 관리 준수	본사 매뉴얼	본사운영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사 매뉴얼에 준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손정보쌈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 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사전동의절차 준수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등 (전국 또는 지역별 행사)
	상품 광고+가맹점모집 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할인행사 등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사전동의절차 준수
	개별 판촉	-	가맹점이 부담	-	-

제휴 서비스	제휴 행사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관측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제휴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	-------	---	---	----------------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관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당사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질성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광고·관측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행사 전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개별 가맹점 (광고, 홍보, 관측)	개별 가맹점 사업자 부담원칙	가맹점사업자 홍보 관측내용 가맹본부 제시 → 가맹본부 승인 → 광고, 관측행사 시행
------------------------	-----------------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계약해지·종료 시 귀책사유 있는 자가 가맹계약서 제47조 제1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상대방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원)의 위약벌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고 실제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 가맹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위약별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3자에게 가맹계약서 제43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3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가맹점이 양도양수되어 양수자인 귀하가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52조 제2항에서 산정한 금액과 제52조제3항의 금액(양도자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귀하의 매출액(VAT 포함)에 따른 로열티” X 잔여개월수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합니다.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로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50조제2항(경업금지)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49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⑥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7조 제1항,(원·부자재, 물품, 상품), 제29조 제1항(자점매입금지)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⑦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⑧ 당사 또는 귀하의 지급요청일에 각 상대방이 지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기타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⑨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서 제52조 제①항 내지 제⑦항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70일 내외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70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70~60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65~60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50	-
가맹금 예치	- 예치 또는 피해보상보험체결	D-50(1일)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50~48(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0(1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40~6(35일)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2~3(10일)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단, 위의 일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황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

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집기·장비교체비용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 (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 -단,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20% 부담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 전에 통보하고 일정, 내용, 비용 등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여 진행함	상호 협의	운영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 전에 통보하고 일정, 내용, 비용 등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여 진행함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운영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손정보쌈]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손정보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브랜드, 사업 운영방침, 영업과 가맹점 운영방침 각종 매뉴얼 교육 (메뉴, 운영, 영업, 판매, 서비스 등)	본사/점포교육	10일간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손정보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0일, 최소 6시간/일	5,5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협의	협의	필요나 요청 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오픈 전 신규교육은 가맹점사업자가 반드시 기한 내 받아야 하고, 이를 지체하거나 이수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은 해지되거나 가맹점 오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기한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나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메뉴명 및 판매가

◆메뉴판

한끼든든메뉴(점심)	손정의메뉴	맹이는걸들임	사리추가
얼큰칼국수 10,000원	손정스페셜 89,000원 (2~3인분)	얼큰 손정 양파 18,000원	보쌈김치추가 10,000원 (300)
김문사물 수육칼국수 10,000원	손이가는 가브리보쌈 小 42,000원 中 49,000원	황골어죽튀김 8,000원	칼국수면추가 3,000원
손맛종파 수육 한접시 11,000원 (맛보기)	집이가는 알,곤이 볶음 小 40,000원 中 47,000원	콩이숙회 20,000원	공기밥 1,500원
알곤이 두부 두루치기 12,000원 (1인분)	*메인메뉴 주문시 손정양파 18,000원 저비스레공	비빔막국수 10,000원	
적화매콤불매 11,000원 (1인분)		얼마손 비빔달면 7,000원	
얼마손 비빔달면 한접시 7,000원 (작아드)		주먹밥 5,000원	
			주류/음료
			소주 맥주 저칼막걸리 청와 일품전로

[위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가맹점 간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여 특정 해당 가맹점으로 인해 인근 또는 전체 가맹점에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가맹점의 판매방식에 대한 통일성을 해치고 전체 메뉴의 판매가격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를 하락시키며 전체 가맹사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의 목적성과 운영 효율성 제고, 원부자재의 원가 및 판매관리비등 비용의 지속적 상승, 가맹점의 판매이익률 증대, 가맹본부의 원부자재 공급가격 변화 등으로 인해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영환경의 변화, 가맹사업의 목적성과 운영 효율성 제고, 원부자재의 원가 및 판매관리비등 비용의 지속적 상승, 가맹점의 판매이익률 증대, 가맹본부의 원부자재 공급가격 변화 등으로 인해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달 및 포장 판매에도 모든 메뉴의 판매가격은 매장 판매가격인 위의 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인정책 등 - 가맹점사업자가 홀, 배달, 포장 등의 판매형태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본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